

2018 하계 실무수습 안내

(실무교육과정 : 리걸클리닉 20시간 + **실무수습 40시간** + 3학년 2학기 실습과정 1학점)

1. 이수

- 실무수습 최소 40시간을 이수하여야 3학년 2학기 필수과목인 실습과정 1학점 신청 가능
- 따라서 최소 40시간을 3학년 1학기 하계방학까지 이수해야 함
- *실무수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무수습 불인정(졸업을 위한 법조유관기관 실무수습 인정 및 실무수습 확인서 발급 등이 불가)
 - *실무수습 보고서 : 학교 자체 서식으로 실무수습 가기 전 학생지도센터에서 수령
- 실무수습 보고서 제출은 법전원 학생의 의무이며, 졸업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실무수습에 참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학교로 공지되지 않는 법조유관기관에서도 실무수습 가능(6. 개인적인 실무수습 참조)
- 1일 근무는 대개 8시간, 기간은 1~4주 정도이나 기관에 따라 다름

2. 대상

- 1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실무수습 신청 가능
- 기관에 따라 선발 대상 다름

3. 절차

- ① [상시] 실무수습 안내 메일 및 문자 신청
- ② [학기중] 지원
 - 학생지도센터 공지 또는 희망하는 기관의 공지 확인 후 지원
 - 개인적인 실무수습인 경우 간단한 추가 서류 제출(6. 개인적인 실무수습 참조)
- ※ 결식비 환불신청(7. 결식비 환불 참조)
- ③ [방학중] 실무수습 실시
- ④ [실습기간 종료 후 1주 이내] 실무수습 보고서 제출
 - 실무수습에 참여한 모든 학생은 졸업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제출

4. 선발 고려 요소

- 학생 선발 방법은 학교 추천 및 기관 자체 선발로 나눌 수 있음
- *학교 추천 기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 및 선발
 - ① 이전 실무수습 참여 여부 및 **철회 여부
 - ② 희망 기관 순위(실무수습 희망기관 신청서) 및 거주지역
 - ③ 수요조사(실시하는 경우) 참여 여부
 - ④ 해당 학기의 실무수습 지원 상태
 - ⑤ 학점, 성적 및 지원 내용과 제출 자료
 - ⑥ 기타(해당 기관의 선호 요소 등)

*학교 추천 기관(2017학년도 기준) : 검찰 일반, 공익인권법재단 공감, 국가인권위원회,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세청, 국회, 대구가정법원, 대구시, 대한법률구조공단, 법원, 법제처, 사법연수원, 정부법무공단, 중앙토지수용위원회, 한국법제연구원, 헌법재판연구원

**철회

- 철회시 이후 실무수습 지원 및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기관에서 철회를 허용하여 철회 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 내에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.
- 학교를 통해 실무수습을 가게 되는 경우, 실무수습 참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 됩니다. 철회자가 생길 경우 기관으로부터 배정인원을 줄이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실무수습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- 내가 철회하는 기관에 정말 가고 싶었던 다른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학생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준비하는 기관의 입장도 있습니다. 실무수습 지원부터 참여까지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무수습 기관

1) 실무수습 협력기관(실무수습 기회 제공 등의 협약을 체결한 기관)

① 법무법인(종합법률사무소)

- 대구지역 : 대경, 범어, 세영, 법여울, 삼일, 창공, 우리하나로, 명우
- 광장, 민주, 태평양, 김앤장, 공감

② 개인법률사무소

변호사 권준호, 변호사 김득환, 변호사 남호진, 변호사 박재한, 변호사 박정호, 변호사 박태호, 변호사 이담, 변호사 이병희, 변호사 이인규, 변호사 이재동, 변호사 전상훈, 변호사 정일화, 변호사 황현호

③ 공공기관(법률기관)

경상북도 상주시, 국민고충처리위원회, 국민권익위원회, 국세청, 국회사무처, 대구가정법원, 대구광역시, 대구지방경찰청, 대구지방노동청, 대구지방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, 대한상사중재원, 법무부, 법원행정처, 법제처, 중앙토지수용위원회, 특허심판원, 한국도로공사, 한국법제연구원, 한국소비자원, 헌법재판연구원

④ 금융기관

대구은행 경북대지점, 신한은행 경북대지점, 한국산업은행

⑤ 그 외

- 시민단체 :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,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,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, 대구여성 의전화, 대구참여연대, 대구환경운동연합, 우리복지시민연합(사)
- 노동법무관련 : 경북지방노동위원회,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,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
- 국외기관 : 북경 국연자문 유한공사, 북경 덕현 변호사사무소, 중국정법대학교 한국법연구중심, 한국세종 변호사사무소-상해대표처

2) 주의사항

- 협력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현재 실무수습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있습니다.
- 협력기관 여부와 상관없이 법조유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수습이 가능합니다.
- 기관에서 관련 공문이나 별도의 공지가 없는 경우 개인적인 실무수습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- 학교로 별도의 실무수습 공지없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만 공지하는 경우가 있으니, 관심이 있는 기관은 반드시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지도센터로 연락바랍니다.

6. 개인적인 실무수습

- 기관 차원의 실무수습이 아닌(실무수습에 대한 기관의 공지나 공문이 없음) 개인적으로 실무수습을 가게 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실무수습 실시 전 학생지도센터로 반드시 제출

① 기관 선정 신청서(지도교수 승인과 학생지도센터장 허가)

② 실무수습 프로그램 참가 예정 확인서(기관 직인)

※ 서식은 학생지도센터나 법학전문대학원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

7. 결식비 환불

- 대상 : 기숙사생 중 1일 3식 신청자이면서 실무수습 기간이 5일 이상인 자(개인적인 실무수습 참여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실무수습 참여를 증명한 경우)

- 환불신청 절차

① 결식비 환불신청서 1부 작성(서식은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)

② 실무수습 확인서 1부를 학생지도센터에서 발급

③ 위의 두 서류를 해당 동의 기관행정실에 제출(반드시 결식일 발생 전에 제출)